

비정년계열교원의 정년계열 전환 임용 규정

(제정 2018. 9.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12조 제6항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정년계열 전환채용(이하 “전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전환 심사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대학(원) (이하 “대학”이라 한다) 소속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전환 심사 업적 인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20.4.14.>

1. 본교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최근 6년 동안 전임교원 기준 학기별 강의평가 백분위의 평균이 상위 30% 이내, 연구업적이 1,200점 이상인 교원(다만, 이공계열 교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에서 정한 I.S.I. 국제전문학술지에 책임저자로 2편 이상의 실적을 갖추어야 함)
2. 본교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최근 3년 동안 전호의 기준을 충족한 교원
3. 본교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최근 6년 동안 전임교원 기준 학기별 강의평가 백분위의 평균이 상위 50% 이내, 연구업적이 600점 이상이며, 산학협력업적이 이공계열은 1,200점 이상, 그 밖의 계열은 720점 이상인 교원

제3조(심사기준) ① 연구업적은 발행일 및 제출일, 산학협력업적은 연구간접경비 납부일이 전환 심사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업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② 업적에 대한 평가점수는 연구업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에 따라 부여하며, 산학협력업적은 같은 규정 [별표 6]에 따라 부여하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간접경비 납부실적으로 한정한다. 다만, 평가항목별 상한선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장 전환 절차 등

제4조(전환 절차) ① 교무처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환 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환 심사 업적 인정 기준일(매년 2월 말일)
2. 전환 심사 절차 및 주요 일정
3. 전환심사위원회 구성
4. 그 밖에 전환 심사에 관한 사항

② 교무처장은 제2조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소속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 대학의 장은 해당 학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환 평가서를 제출받아 소속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소속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가 교원인사위원회를 대신하며, 대학원 및 수퍼스타칼리지, 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없는 학과는 소속인사위

원회가 전환 평가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0.4.14.>

④ 소속인사위원회는 전환 심의 회의록에 해당 학과의 전환 평가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의 전환평가서에서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속인사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한다.

⑤ 전환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업적 및 전환 평가서 등을 검토하여 전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는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추천 순위는 다음 각 호를 따르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부적격하다고 판정하거나 전환 평가서에서 ‘부’로 평정된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1.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격을 갖춘 교원은 연구업적 고득점자 순

2. 제2조제3호의 자격을 갖춘 교원은 산학협력업적 고득점자 순(다만, 인문사회계열 및 예술계열 교원은 산학협력업적 점수에 3분의 5를 곱한다)

⑥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환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대학의 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전환 인원) 전환 인원은 매년 3명 이내로 한다.

제6조(임용 시기 등) ① 전환 임용 시기는 매년 9월 1일로 한다.

② 전환 임용은 정년계열 전임교원 조교수 2회차, 임용기간 4년으로 임용한다.

③ 전환 임용 교원의 호봉은 본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최초 임용 시 산정된 경력에 본교에 재직 한 경력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제3장 전환심사위원회

제7조(설치) 전환 대상자를 심사 및 추천하기 위해 전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교육혁신본부장과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무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1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불비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환 평가서

비정년계열 교원의 정년계열 전환 평가서

전 환 심 사 대 상 자	성 명		
	대학 / 학과	대학(원)	학과
	직 급		
학 생 지 도 참 여 정 도			
학과 및 대학 발전기여정도 (행사참여 등)			
기 타 (교원윤리 및 품위유지 등)			
종 합 의 건			
가 부 결 정	☐ 가 ☐ 부 ☐ 소속인사위원회에 위임		

※ 학과 회의(정년계열)에서 합의 또는 다수결로 가, 부를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소속인사위원회에 위임한다.

20 년 월 일

○○대학(원) ○○○○학과

학과장	(인)	소속교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학과 소속 정년계열 전임교원 전원이 자필 서명하여야 함